

배포 일시	2022. 12. 30.(금)		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	책임자	과 장 김종오 (044-201-3855)
			팀 장 이진우 (044-201-4760)
		담당자	사무관 김동규 (044-201-4861)
			주무관 박경민 (044-201-4873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의심사례 수사의뢰 - 교통사고 환자 관련 의료기관 불법행위 적발로 보험금 누수방지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12월 30일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
  - 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“자동차보험 허위·과다입원환자(속칭 ‘가짜환자’)와 같은 사회적 양치행위에 대해 법치·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”을 지시하였으며,
    -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,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·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,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“심평원”)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였다.
    -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심평원은 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하였고,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적인 허위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(12.9)하였다.

< A한의원 사례 >

- 다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병원을 방문한 날짜를 부풀려(내원일수를 조작, 더 많은 날짜에 방문·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밈) 불법·부당하게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
- 의사(한의사)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를 실시(무면허 의료행위)

-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,
  -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 작성한 의료기관에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(모럴 헤저드, Moral Hazard)로 인하여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” 며,
  - “불법적인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,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, 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” 고 말했다.
- 국토교통부는 심평원, 금감원, 지자체, 손보험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.